토스뱅크 자유 적금 특약

제1조 (적용범위)

「토스뱅크 자유 적금」(이하 "이 적금"이라 합니다)의 거래는 이 특약이 적용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「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」, 「토스뱅크 모바일뱅킹 서비스 이용약관」, 「자동이체(송금) 약관」, 「예금거래기본약관」 및 「적립식예금약관」을 적용합니다.

제2조 (예금과목)

이 적금의 예금과목은 정기적금으로 합니다.

제3조 (가입대상)

이 적금의 가입대상은 실명확인 된 본인명의 토스뱅크 통장 또는 토스뱅크 서브 통장(이하 "근거계좌"라 합니다.)을 보유한 실명의 개인으로 하며 근거계좌를 통한 신규만 가능합니다.

제4조 (가입의 제하)

이 적금은 1인 1계좌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. 다만, 토스뱅크가 복수의 계좌 개설을 허용하는 경우(파트너 제휴, 이벤트 등)에 한하여 추가 개설이 가능합니다.

제5조 (가입금액)

이 적금의 가입금액은 0원이상 300만원 이하로 합니다.

제6조 (적립금액)

- ① 이 적금은 근거계좌를 통한 입금만 가능하며 매월(해당 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) 최대 300만원까지 자유롭게 적립이 가능하고 적립 시 최소 금액은 1원으로 합니다.
- ② 제10조 자동이체 서비스를 통하여 적립된 금액도 제1항의 월 적립금액 한도에 포함됩니다.

제7조 (계약기간)

이 적금의 계약기간은 3개월 이상 36개월 이하로 하며 월단위로 정할 수 있습니다.

제8조 (금리적용)

- ① 이 적금의 기본금리는 가입일(자동 재가입의 경우 재가입일을 의미하며, 이하 같습니다.) 당시 모바일앱(이용자의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은행이 제공하는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전자적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'토스앱'을 말합니다. 이하 같습니다.) 및 토스뱅크 인터넷홈페이지(이하 "인터넷홈페이지"라 합니다.)에 게시 된 금리를 적용합니다.
- ② 이 적금에 제9조에서 정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경우, 제1항의 기본금리에 더하여 계산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.

제9조 (우대금리)

이 적금은 만기일 전일까지 아래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일 당시 모바일앱 또는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. 다만,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한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.

1.계약기간 동안 제10조에 따른 자동이체에 의한 적립을 모두 성공한 경우

제10조 (자동이체 서비스)

- ① 이 적금은 자동이체가 필수인 상품으로 가입 시 아래 각 호와 같이 근거계좌에서 이적금 계좌로의 자동이체가 설정되고 계약기간 동안 자동이체의 해지는 불가합니다.
- 1. 자동이체 금액 : 최소 1원부터 최대 300만원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.
- 2. 자동이체 주기: 월단위 자동이체가 설정되며 자동이체 주기 변경은 불가합니다.
- 3. 자동이체일: 최초 가입시 고객이 지정한 날(해당하는 날이 없는 경우 해당 월의 말일)로 설정되며 변경은 불가합니다.
- ② 이 적금 가입 시 설정되는 자동이체 외에 추가 자동이체 등록이 불가합니다.

- ③ 자동이체는 해당일 11시부터 처리되며 출금계좌 잔액부족 시 미처리 되고 부족자금이채워지는 경우 재처리합니다. 다만, 재처리는 자동이체 해당일 23시까지 만 처리합니다.
- ④ 이 적금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 설정된 자동이체도 함께 해지됩니다.

제11조 (중도해지금리)

만기일 이전에 이 적금의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가입일로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대하여 가입일 당시 모바일앱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기간별 중 도해지금리를 적용합니다.

제12조 (만기후금리)

만기일 이후 이 적금의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만기일로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만기일 당시 모바일앱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기간별 만기후금리를 적용합니다.

제13조 (만기 자동해지)

- ① 이 적금은 만기일에 자동해지하여 해지원리금을 근거계좌로 입금처리 합니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만기일에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만기 자동해지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.
- 1. 이 적금에 압류, 지급정지 등 지급제한 사고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
- 2. 근거계좌에 입금제한 또는 압류, 지급정지 등 지급제한 사고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
- ③ 제2항 제2항에 해당하여 만기에 자동해지가 되지 않았을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처리할 수 있습니다.
- 1. 고객이 직접 해지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로 해지원리금을 이체할 수 있습니다.
- 2. 이 적금 계좌에 대한 실명확인 절차를 완료한 후 고객이 직접 해지하여 고객이 지정한 계좌로 해지원리금을 이체할 수 있습니다.

제14조 (미리 빼기)

- ① 이 적금은 가입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최대 2회까지 적립 금액 중 일부를 미리 뺄수 있으며 미리 빼기 시에는 최근 납입한 금액부터 뺍니다. 다만, 이 적금에 압류, 지급정지 등 지급제한 사고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미리 빼기가 불가합니다.
- ② 미리 빼기한 금액은 근거계좌로의 이체만 가능합니다. 다만, 미리 빼기 후 최소 유지금액은 1만원 이상이어야 하며, 미리 빼기 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11조에 따른 중도해지금리를 적용합니다.

제15조 (만기 시 자동 재가입)

- ① 이 적금은 고객이 만기일 전일까지 자동 재가입을 신청한 경우에 한해 만기일에 자동재가입이 실행됩니다.
- ② 만기일에 해지원리금은 제13조 제1항에 따라 근거계좌로 입금처리하고, 직전 계좌에 등록된 자동이체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출금하여 자동 재가입 합니다.
- ③ 자동 재가입 시 직전 계좌에 등록된 자동이체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자동이체 금액이 설정됩니다.
- ④ 고객이 자동 재가입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 재가입 되지 않습니다.
- 1. 만기일에 이 적금에 압류, 지급정지 등 지급제한 사고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
- 2. 이 적금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한 경우
- 3. 만기일에 근거계좌에 입금제한 또는 압류, 지급정지 등 지급제한 사고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
- 4. 만기일에 이 적금의 판매 중단 등으로 인하여 신규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
- 5. 근거계좌의 출금가능금액이 직전 계좌에 등록된 자동이체 금액보다 작은 경우

제16조 (제한사항)

이 적금은 양도에 의한 명의변경이 불가하나, 상속에 의한 명의변경은 가능합니다. 다만, 상속에 의한 명의변경은 상속인이 토스뱅크에 계좌를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.

※이 약관은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토스뱅크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

이 약관은 2023년 8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

이 약관은 2023년 9월 24일부터 시행하며 기존 가입고객에게도 적용합니다.

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, 13층 | 고객센터 1661-7654 | 사업자번호 462-86-01671

